

#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9,836,168	8,995,085
일반회계	282,437,605	8,473,128
특별회계	17,398,563	521,957
기타특별회계	17,398,563	521,957
상수도특별회계	8,342,893	250,287
주택사업특별회계	22,397	672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161,932	34,85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43,426	25,303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3,156,076	94,68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56,232	7,687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364,557	10,93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251,050	97,53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6억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488,80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4) 동일부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